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0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04월 23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 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기금 조성 재원 항목을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부합하도록 각각 수정함(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).
-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명시된 항목 외에 ‘기금 조성을 위한 그 밖의 수입’을 별도의 호로 구분하여 기금 조성 재원 항목으로 규정함(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).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특별회계의 기금전출금 단,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” 을 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. 단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차입금” 을 “예수금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

4.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

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</u>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</p> <p>3.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</p> <p>4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.</p> <p>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의 기금전출금 단,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<u>차입금</u></p> <p>3. <u>정부지원금 및 융자금</u></p> <p>4. <u>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</u> 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.</p> <p>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. 단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다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<u>예수금</u></p> <p>3. <u>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</u></p> <p>4. <u>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</u></p> <p>5. <u>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</u></p>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”을 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. 단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차입금”을 “예수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

4.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

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사무중”을 “사무 중”으로 하며, “포함)및”을 “포함) 및”으로 하고, “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으로 하며, “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”을 “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</u>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<u>차입금</u> 3. <u>정부지원금 및 융자금</u> 4. <u>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</u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<신 설></p> 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<u>사무중</u> 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<u>포함</u>)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에서 정하는 관서 <u>회계관계 공무원</u>을 <u>기금관리 공무원</u>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. 단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u>----- ----- -----.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<u>예수금</u> 3. <u>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</u> 4. <u>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</u> 5. <u>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</u> 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, ----- <u>사무 중</u> ----- <u>포함</u>) 및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----- <u>회계관계공무원</u>을 <u>기금관리공무원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